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구자근 의원 외 5인)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3. 8. .
 발 의 자 : 구자근 · 이달 · 박성만 ·
 최우섭 · 홍광중 · 박태환의원
 (6인)
 찬 성 자 : 12인

1. 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적정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 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심사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정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해당 안건 관련자(배우자 등 포함)에 대한 제척 기준 마련

다. 심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함

라. 변경요구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14조)

- 위원회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함
- 수급인이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3. 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 붙임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없음

6. 참고사항 : 붙임참조

- 발의 및 찬성의원 서명 명부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되는 경우(하도급 비율이 82%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내용 서면 통보 결과 수급인이 거짓으로 계약 자료를 통보한 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예정 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4.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하거나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는 경우
5.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90점 미만이라도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한 경우
6.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무정보과장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이 있는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심사)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심사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사서 및 안건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② 위원회는 필요시 감리원 등 공사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본청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 공개)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변경요구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사) 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8조 관련)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	$30 - 2 \left(\frac{82}{100} - \frac{\text{하도급금액}}{\text{원도급금액}} \right) \times 100$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 - 1/2 \left(\frac{88}{100} - \frac{\text{원도급금액}}{\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20 - 1/2 \left(\frac{75}{100} - \frac{\text{원도급금액}}{\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 75%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 - 1/2 \left(\frac{90}{100} - \frac{\text{원도급금액}}{\text{추정금액}} \right) \times 100$ ※ 9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20 - 1/2 \left(\frac{86}{100} - \frac{\text{원도급금액}}{\text{추정금액}} \right) \times 100$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 3배 이상 ○ 2.5배 이상 3배 미만 ○ 2배 이상 2.5배 미만 ○ 1.5배 이상 2배 미만 ○ 1배 이상 1.5배 미만 ○ 1배 미만	10 (10) (9) (8) (7) (6) (5)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 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 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 2배 이상 ○ 1.5배 이상 2배 미만 ○ 1배 이상 1.5배 미만 ○ 0.5배 이상 1배미만 ○ 0.5배 미만	10 (10) (9) (8) (7) (6)	○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 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 3년 이상 ○ 2년6월 이상 3년 미만 ○ 2년 이상 2년6월 미만 ○ 1년6월 이상 2년 미만 ○ 1년 이상 1년6월 미만 ○ 1년 미만 ○ 미등록	10 (10) (9) (8) (7) (6) (5) (4)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 3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1년 미만	5 (5) (4) (3) (2)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 당해 하도급 공사업 기준
	다. 임금체불이력	(△)5	○ 감점
	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 ○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3 (△)5	○ 감점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 낮음 ○ 보통 ○ 높음	5 (5) (4) (3)	○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 1년 이상 ○ 1년 미만	4 (4) (3)	○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 1년 이하인 공종 ○ 1년 초과 3년 이하인 공종 ○ 3년 초과 5년 이하인 공종 ○ 5년 초과 공종	5 (5) (4) (3) (2)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도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군 또는 인접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 ※ 소숫점 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임금체불 이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 ※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은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

[별지 서식]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하 도 급 공 사 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찰율	%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50 (30) (2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평가 공시액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20 (10) (1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다. 임금체불이력 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	15 (10) (5) (△)5 (△)5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 하도급공사의 시공여건	15 (5) (4) (5) (1)		

【관 계 법 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27>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2.7.4>
-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전문개정 2011.11.1]

【붙임】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요인

-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5조에 따른 비용추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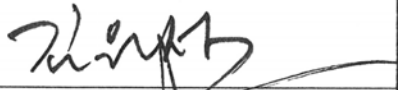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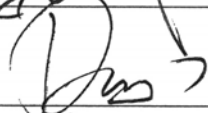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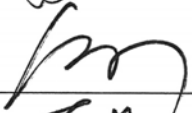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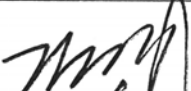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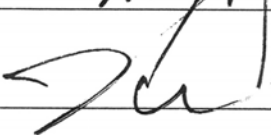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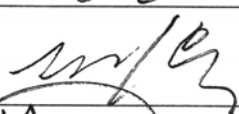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는 해당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되므로 조례 시행 전에 비용추계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외부 위원 수당 등으로 국한되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액일 것으로 판단됨.

(제명 :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 -

찬성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김원석		
김봉남		
이경임		
이권현		
원창욱		
박진현		
조영기		
조희남		
장종현		
손기욱		
최두주		
황희주	